관리번호	규정-구매-2024-001_Rev.1
제정일자	2024.05.07
수정일자	2025.05.28

협력사 행동규범

대승
DAESEUNG.Co.,Ltd

1. 개요

· 목적

㈜대승은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대승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협력사(이하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승은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상

㈜대승 전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협력사 책임과 역할

㈜대승의 거래 협력사는 경영 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승 및 ㈜대승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으며,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으며, ㈜대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부패방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공갈•횡령•알선•청탁 등을 금지하며,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됩니다. 협력사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불공정 거래 방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시장지배적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품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되며, 경쟁 또는 협력업체,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 **위조부품 방지**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수출 제한 준수**

협력사는 수출제한 또는 경제제재 관련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며,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지역•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되며,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시 ㈜대승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 **정보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책임있는 자재 구매**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광물중 RMI 분류 기준에 따라 CMRT, EMRT, AMRT에 해당하는 광물을 대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윤리위반•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해야 합니다.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윤리위반•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1) RMI :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있는 광물 조달 협의체)

※ 2) CMRT : Conflict Mineral Reporting Template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 3) EMRT : Extended Mineral Reporting Template (확장광물 보고 템플릿) : 코발트, 운모, 니켈, 리튬, 흑연, 구리

※ 4) AMRT : Additional Minerals Reporting Template (추가광물 보고 템플릿) : 알루미늄, 망간, 크롬, 티타늄 등 8종

3. 노동 / 인권

· **아동노동 사용 금지**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협력사는 성별•인종•민족•국적•종교•장애•나이•가족 현황•사회적 신분•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할 수 없으며,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직원 채용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휴식을 포함한 임직원의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하며,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하며,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하며,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 교섭 사항 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임직원이 교섭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도록 합니다.

· **강제 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협박・감금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안전 / 보건

·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하며,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계획•절차•결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방호벽•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며, 안전 보호구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 **비상상황 대응**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 대비하기 위해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상황 시 탈출로•유도등•화재 감지기•경보기•소방시설 등을 갖고, 작동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안전 진단**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어 있는지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공지 및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임산부•연소자 등을 안전 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이민자 등과 같은 사회적 취약 임직원 또한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보건 관리**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숙사 제공 시 안전표지•조명•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5. 환경

·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 시스템(ISO14001 표준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감소•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림파괴 현황 확인 및 리스크를 인식하게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EUDR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 규제) 에서 규제하는 원재료 (고무, 목재, 팜유, 코코아, 커피, 콩, 쇠고기) 와 이로부터 파생된 제품들에 대해 관리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 **준수의지 표명**

협력사 경영진은 본 행동 강령의 준수 책임자로써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 **담당자 선임**

협력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하며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리스크 점검**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교육 및 소통**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하며,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정보 관리**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해야하며,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 관리**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게도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한 경우 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범 준수**

협력사는 ㈜대승 또는 ㈜대승이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 점검 시 행동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해당문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